

대구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가합20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피고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이병호

변론 종결2024. 3. 28.

판결 선고2024. 4.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2. 4. 5. 접수

제4097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2. 4. 5. 접수 제4097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망 G는 2022. 3. 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망 H은 2022. 3. 13. 사망하였다(이하 망 G, H을 통틀어 '망인들'이라고 한다).

2) 원고 B(장남), C(차남), D(삼남), E(사남), A(오남)과 피고(육남)는 망인들의 자녀들이다.

나.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1) 망 H은 2020. 10. 14. 공증인가 I법무법인 증서 2020년 제222호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

2) 망 G는 2020. 10. 29. 공증인가 J법률사무소 증서 2020년 제320호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라고 하고, 위 각 유언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 내역

2022. 4. 5. 별지 목록 제1 ~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서는 각 2022. 3. 1.자 유증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서는 각 2022. 3. 13.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들은 2022. 8. 19.경 대구수성경찰서에 피고를 존속살해, 업무상과실치사,

컴퓨터등사용사기, 공정증서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혐의로 고소하였다(사건번호 2022-006451).

2) 대구수성경찰서장은 2023. 4. 6.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구수성경찰서에 위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였다.

3) 대구수성경찰서장은 2023. 8. 16. 위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고소인인 원고들은 대구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10. 30. 대구수성경찰서에 위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

4) 대구수성경찰서장은 2024. 1. 8. 위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고소인인 원고들은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불송치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1. 24. 대구수성경찰서에 위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하여, 현재 위 사건은 대구수성경찰서에 계류 중이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 12, 14 ~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5,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유언공정증서에 기한 유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별지 목록 제1 ~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가. 오랜 기간 신경계 관련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치매 등 질환을 앓던 망인들은 유증의 법률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유언공정증서에 기한 유증은 무효이다(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나. 망인들은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유언의 취지를 이해하거나 이를 구수할 수 없었고, 이 사건 각 유언공정증서에는 유언자인 망인들의 서명날인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유언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이다(이하 '제2 주장'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치매 등 질환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던 피상속인인 망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 중 유언자인 망 G의 서명날인 부분을

위조하였으므로, 민법 제1004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고 한다).

3.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유언에 요구되는 의사능력, 즉 유언능력은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으로서 그 성격 등에 비추어 재산적 행위에 요구되는 정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능력의 유무도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유언자의 유언 당시의 판단능력, 질병의 상태, 유언의 내용, 유언작성 당시의 상황, 유언에 대한 종래의 의향, 수증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등 참조).

2) 망 H의 의사능력 흠결 여부 가) 갑 10, 11호증, 6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축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 H은 2018. 3. 19.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신경과의원에서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고 MMSE1)

18점, GDS2) 3단계로 평가되었고, 알츠하이머병 증상 개선제인 도네페질 성분이 포함된

도네페트정 5mg을 처방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망 H은 2019. 3. 14. 위 M신경과의원에서 MMSE 19점, GDS 3단계로 평가되었다.

② 망 H은 2020. 2. 13. 위 M신경과의원에서 '주상병 알츠하이머병, 부상병 루이소체치매'를 진단받고 MMSE 15점, GDS 4단계로 평가되었고, 망 H에게 처방되는 도네페트정이 10mg으로 증량되었다.

③ 망 H에 대한 의무기록지에는 망 H의 상태에 관하여 2019. 3. 14.에는 "환청, 환시? 이전에 있었으나 약복용후 없다", 2020. 2. 13.에는 "환시, 환청이 있는듯하다. 야간, 새벽에 acting out 간헐적 있다", 2020. 3. 16.에는 "주간 불안이 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④ 망 H은 대구 중구 N에 있는 O신경과 의원에서 2020. 5. 13. 및 2021. 5. 8.에 MMSE 13점, CDR3) 2점으로 각 평가되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2,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인정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을 당시 망 H에게 의사식별능력 내지 유언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H은 2018. 3. 19.경부터 알츠하이머병을 앓다가 2020. 2. 13.경에 이르러서는 환시, 환청을 경험하거나 간헐적으로 분노, 적대감 등을 표출하는 행동화(acting out)를 보이는 등 루이소체치매 의심 증상이 관찰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0. 5. 13. CDR이 2점으로 측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M신경과 의원에서 작성된 망 H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위원은 망 H에 대하여 2020. 5. 13. 실시된 CDR에서 2점으로 평가되었고, 일반적으로 CDR이 2점인 경우 중등도의 치매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이 상당히 제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20. 5. 13.경부터는 망 H에게 중증도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2020. 5. 13. 망 H에 대하여 실시된 CDR의 항목 중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부분에서는 '문제해결능력,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대한 중등도의 장애: 사회생활에 대한 판단력은 대부분 유지되어 있음'이라고 평가되었는바(갑 11호증의 1), 이에 비추어 보면 망 H은 중등도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적·경제적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 H의 담당 의사 M은 2020. 11. 3. 망 H에 대하여 '금일 인터뷰상 최근기억장애는 여전히 보이고 있으나 판단능력이나 지남력 장애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작성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 H이 이 사건 제1

유언공정증서 작성일인 2020. 10. 14. 이전부터 이미 의사식별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망 H은 그 이후인 2021. 5. 8. 실시된 CDR 결과 2점으로 측정되었고, 그중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항목에서는 '문제해결능력,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심한 장애: 사회생활에서의 판단력이 대부분 손상됨'이라고 평가되었는바(갑 11호증의 2), 망 H이 앓고 있던 치매 증상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장기요양기관인 P복지센터가 2020. 4. 22.부터 2021. 11. 27.까지 망 H에 대하여 작성한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에는 바다식물 찾기(2021. 1. 9.), 인물 알기(2021. 1. 5.), 다른 그림 찾기(2021. 1. 11.), 달력 이해(2021. 1. 12.), 장소 알기(2021. 1. 19.) 등의 인지 과제를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유언공정증서 작성일인 2020. 10. 14. 무렵에도 망 H의 판단능력, 문제해결능력이 대부분 손상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비록 이 사건 제1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을 당시 망 H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 H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육남인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망 H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거나 난해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1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김형배, 류상욱은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망 H이 유언공정증서4)에 자필로 자기 이름을 기재하였고, 당시 변호사와도 유언공증에 대한 대화와 대답도 잘 하는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제1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을 당시 망 H은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3) 망 G의 의사능력 흠결 여부 가) 갑 6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K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 G는 2013. 8. 23. 앞서 본 M신경과의원에서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았고, MMSE는 26점, GDS는 2단계로 평가되었다. 이후 망 G는 2014. 4. 16. 위 M신경외과의원에서 '주상병 경도인지장애, 부상병'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받았다.

② 망 G는 2015. 7. 16. M신경과의원에서 '주상병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 부상병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았다. 망 G는 2015. 7. 16. 당시 MMSE 26점, GDS 3단계로 평가되었다가,

이후 2016. 6. 21.에는 MMSE 23점, GDS 3단계로 평가되었다.

③ 망 G는 2018. 12. 19. M신경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전증을 진단받았다. 망 G에 대한 의무기록지에는 망 G의 상태에 관하여 2018. 12. 19.에는 "안면이 실룩거리고 쓰러짐, 잠시 말이 안됨", 2020. 7. 17. 및 같은 해 8. 7.에는 "양손이 떨린다", 2021. 1. 19.에는 "환청, 저녁에 나갈려고 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④ 망 G는 M신경과의원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은 2015. 7. 16.경부터 최종적으로 외래 방문한 2021. 8. 16.경까지 알츠하이머병 증상 개선제인 도네페질 성분이 포함된 하이셉트정 또는 도네페트정 5mg을 처방받았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1, 9 ~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인정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을 당시 망 G에게 의사식별능력 내지 유언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 G는 2015. 7. 16. 주상병으로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고, 2016. 6. 21. MMSE 23점, GDS 3단계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로 사망하기 이전까지 망 G의 인지기능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 결과에 관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M신경과의원에서 작성된 망 G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알츠하이머병 증상 개선제인 도네페질의 처방 용량은 2015. 7. 16.경부터 2021. 8. 16.경까지 5mg으로 유지되었는데, 위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위원은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 G의 GDS는 2016. 6. 21. 당시 GDS와 같은 3단계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경우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망 G는 2018. 12. 19.경부터 뇌전증을 앓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8. 12. 19.경에는 안면의 경련 증상과 일시적인 실어증이, 2020. 7. 17. 및 같은 해 8. 7.경에는 양손이 떨리는 증상이 각 관찰되었으며, 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인 2021. 1. 19.경에는 환청 증상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위 증상들이 상당 기간 지속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증상들을 직접 확인하였던 담당

의사 M은 2020. 11. 3. 망 G에 대하여 '최근기억장애가 주된 증상이며 상황판단능력이나 읽고 쓰고 따라하기 등은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작성하였고, 장기요양기관인 P복지센터가 2019. 11. 8.부터 2021. 11. 17.까지 망 G에 대하여 작성한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에는 망 G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기재를 찾아보기 어렵다.

③ 비록 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을 당시 망 G가 어느 정도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 G가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그 소유 지분 중 일부를 육남인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망 G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거나 난해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Q, R은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망 G가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쓰고 기억력이 또렷한 것 같았고, 당시 변호사와도 유언공증에 대한 대화와 대답도 잘 하는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을 당시 망 G는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론 따라서 망인들이 이 사건 각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의사식별능력 내지 유언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68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S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유언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방식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들에게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각 유언공정증서에는 '공증인이 망인들의 촉탁에 의하여 증인들을 참여시키고 유언의 취지를 청취하여 증서를 작성한 후 망인들과 증인들에게 이를 낭독하였고, 망인들과 증인들이 증서의 기재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또한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증인법의 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 제1 유언공정증서에는 망 H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민법 제1068조는 유언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서명날인'이 아닌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당초부터 망 H이 그 이름을 자필로 기재할 필요가 없고, 유언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기명날인을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1511 판결 참조). 여기에 감정인 S은 감정목적물[공증촉탁서(을 3호증), 2021. 5. 5.자, 2021. 7. 23.자 및 2021. 7. 24.자 각 증여확인서]에 각 기재된 망 H의 필적과 비교대조물(2019. 4. 16.자 급여제공계획설명확인서, 2021. 9. 17.자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은행전표, 검사결과지)에 각 기재된 망 H의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공증촉탁서(을 3호증) 중 망 H의 성명 옆에 날인된 인영이 이 사건 제1 유언공정증서 중 망 H의 성명 옆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망 H이 이 사건 제1 유언공정증서에 기명날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1 유언공정증서에 망 H의 자필 서명이 생략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068조에 정한 방식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감정인 S은 '감정목적물[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갑 5호증의 2), 공증촉탁서(을 4호증)]에 각 기재된 망 G의 필적과 비교대조물[2021. 9. 17.자 T은행 신청서(갑 9호증의 1), 1988. 10. 5.자 자필 서명(갑 9호증의 2) 및 2017. 6. 7.자 조합거래신청서, 2002. 3. 1.자 U조합 조합원가입신청서]에 각 기재된 망 G의 필적 사이의 동일성 여부를 논단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원고 A이 망 G의 필적과 관련하여 사적으로 의뢰한 V문서감정원의 감정서(갑 13호증의 2, 이하 '사설감정'이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망 G의 필적은 위 비교대조물에 기재된 망 G의 필적과 상이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 감정인 S은 '감정목적물과 기재 시기가 가까운 비교대조물인 2021. 9. 17.자 T은행 신청서(갑 9호증의 1), 2017. 6. 7.자 조합거래신청서에는 "W"자만이 존재하며 상당수의 동일한 특징이 현출되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면서, "W"자의 동일한 특징으로는 '제1획의 운필 방향, 제1, 2획의 연획 형태, 제2획의 운필 방향, 제2, 3획의 위치 관계, 제3, 4획의 접합 위치, 제5, 6획의 시필부 및 종필부의 위치 관계, 제5획의 시필부의 운필 방향 및 종필부의 운필 형태, 제6획의 시필부 및 종필부의 운필 형태, 제7획의 운필 방향, 제7, 8획의 접합 위치, 제8획의 운필 방향 및 종필부의 꺾임 형태, 제9획의 운필 방향'이 열거된 반면, 상이한 특징으로는 '제3획의 시필부의 입필 방향 및 종필부의 운필 형태'만 발견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의 망 G 서명 부분 중 "W"자는 망 G의 필적으로 보이는 점, ㉡ 감정인 S은 '감정목적물과 기재 시기가 많이 차이 나는 비교대조물인 1988. 10. 5.자 자필 서명(갑 9호증의 2), 2002. 3. 1.자 U조합 조합원가입신청서에는 "G" 전체 필적이 존재하며, 동일한 특징에 비해 상이한 특징의 비중이 훨씬 높게 현출되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망 G가 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만 95세로 고령이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G"자의 필적에서 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약 18년 내지 32년 이전에 작성된 비교대조물에 기재된 "G"자의 필적과 비교하여 상이한 특성이 상당수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망 G의 필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사설감정은 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X"자와 비교대조물에 기재된 "X"자 사이에 동일한 특성이 존재하나, 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W"자, "Y"자와 비교대조물에 기재된 "W"자, "Y"자 사이에 각각 상이한 특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감정목적물과 비교대조물에 각 기재된 필적 사이의 동일한 특징과 상이한 특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취신하기 어려운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Q, R은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망 G가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쓰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 중 망 G의 서명 부분은 망 G가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공증촉탁서(을 4호증) 중 망 G의 서명 부분 옆에 날인된 인영이 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 중 망 G의 서명 부분 옆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가 민법 제1068조에 정한 방식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유언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방식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치매 등 질환으로 의사식별능력 내지 유언능력이 없었던 피상속인인 망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 사건 제2 유언공정증서 중 유언자인 망 G의 서명날인 부분을 위조함으로써 민법 제1064조, 제1004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수증 내지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채성호

판사박소민

판사배종빈

별지

1)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는 시간 지남력(5점), 장소 지남력(5점), 기억등록(3점), 주의집중 및 계산(5점), 기억회상(3점), 언어(8점), 시공간 구성(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 퇴화척도)의 1단계는 인지장애 없음, 2단계는 매우 경미한 인지장애, 3단계는 경미한 인지장애, 4단계는 중증도의 인지장애, 5단계는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6단계는 중증의 인지장애, 7단계는 후기 중증의 인지장애를 의미한다.

3)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치매척도검사)은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사회활동, 집안생활과 취미, 위생 및 몸치장 등 6가지 영역에 대한 환자 및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CDR 척도는 총 5점의 점수로 이루어지고 0점은 치매 아님, 0.5점은 치매 의심, 1점은 경한 치매, 2점은 중등도 치매, 3점은 심한 치매, 4점은 매우 심한 치매, 5점은 말기 치매를 의미한다.

4) 망 H의 서명이 기재된 공증촉탁서(을 3호증)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